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9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6년 10월 11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시설과장 윤 범 수)

□ 제안이유

-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「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경감을 확대」의 경기도 공문이 시달(광역교통기획단-4098, 2006.6.27)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경감과 위탁대행료 납부금액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를 정함.(안 제5조제4항 신설)
 - ▶ 노상주차장 : 1대당 주차구획면적(m^2)×면수×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×25/1,000×점용기간(년)×주차장운영시간/24×운영일수/365
 - ▶ 노외주차장 : 점용면적(m^2)×해당토지(또는 인근)의 개별공시지가×25/1,000×점용기간(년)
 - ▶ 지하주차장·주차빌딩 : 1대당 주차구획면적(m^2)×면수×해당토지(또는 인근)의 개별공시지가×25/1,000×기간(년)
-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

감정평가로 대행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제5항 신설)

-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외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제 불황 등의 사유로 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함.(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
-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현행 50%에서 60%로 확대 경감하고,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는 80%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.(안 별표 1 제3호라목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동 조례와 관련한 주차장의 현재 운영 주체는 ?	○ 시설관리공단 임.
○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위탁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문제점 해소대책은 ?	○ 현재 1호 주차장이 위탁운영 대상이 되겠으며, 향후 신설주차장에 대해 검토되어 공단의 인력은 문제시 될 수없다고 판단됨.
○ 타 시·군의 사례와 문제점은 검토하였는지 ?	○ 성남시,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주차장 운영수입은 현재와 같이 시에 납부되겠으며 운영주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따라 약 10%정도가 위탁운영 주체의 운영비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함.
○ 수의계약 문제점이나 장점은 ?	○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수의계약 단체를 선정할시 위탁주체가 시의 조건을 수용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임.
○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인지 ?	○ 부천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 8개단체가 있으며, 고엽제전우회, 장애인단체, 군경미망인회, 상이군경회등이 있으며, 이들단체에게 위탁 운영하여 보조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음.

질 의	답 변
○ 비슷한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주장했을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?	○ 현재까지의 방침은 시에서 지원을 받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.
○ 운영상 적자가 났을때 구제해야 하는 방안과 시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하는데 ?	○ 조문에도 “현저히 감소될 경우”라고 표현되어 있으며, 운영상 적자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임.
○ 운영 주체의 적자부분은 편법운영이나 이용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?	○ 계약조건에 보완사항을 추가로 제시할것이며,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.
○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,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, 계속 계약은 불가능한지 ?	○ 수익의 차이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는 사안이나 운영의 제한규정은 있어야 됨.
○ 급지별 수익 측면을 설명한다면 ?	○ 주차장 운영 수익은 1급지인 상업지역에서는 흑자가 되겠으나 2, 3급지에서는 운영될 수가 없을것임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·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하나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 운영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편법 운영등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할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9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안년월일 : 2006. 10. 11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영주차장을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 운영함은 교통질서 확립의 공익성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수탁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양면성을 조화롭게 검토되어야 하고,
- 위탁운영의 중점 사항인 위탁 대행료 산정이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.

2. 주요골자

- “공영주차장의 위탁 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.(안 제5조 제8항)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“공영주차장의 위탁 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신설 한다.

(안 제5조 제8항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[별표 1]</p> <p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</p> <p>비고</p> <p>1·2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5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[별표 1]</p> <p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</p> <p>비고</p> <p>1·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</p> <p>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~⑦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⑧ <u>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[별표 1]</p> <p>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</p> <p>비고</p> <p>1·2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표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납부하여야 할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2항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당해토지의 지목이 도로·하천·구거·임야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.

1. 노상주차장 : 1대당 주차구획면적(m²) × 면수 ×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 × 25/1,000 × 점용기간(년) × 주차장운영시간/24 × 운영일수/365
2. 노외주차장 : 점용면적(m²) × 해당토지(또는 인근)의 개별공시지가 × 25/1,000 × 점용기간(년)
3. 지하주차장·주차빌딩 : 1대당 주차구획면적(m²) × 면수 × 해당토지(또는 인근)의 개별공시지가 × 25/1,000 × 기간(년)

⑤시장은 위탁대행료를 제4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산출할 수 있다.

⑥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⑦시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 기간은 당초계약기간 내로 한다.

⑧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 및 재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 1 비고란의 제3호라목중 “50퍼센트를 경감한다”를 “60퍼센트를 경감하고,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경감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